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1855호
2020년 9월 10일(목)

차 례

【 고 시 】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내용고시[별내동]----- 1
-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 내용고시[별내동]----- 2

【 공 고 】

-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공인 등록(신조 및 폐기) 공고----- 12
- 덕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5
- 2020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계획----- 17
-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9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9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람·공고----- 30
- 도로지정공고[진접읍]----- 31
- 도로지정공고[진접읍]----- 32
- 도로지정(변경)공고[진접읍]----- 33
- 도로지정(변경)공고[진접읍]----- 34
- 도로지정(변경)공고[화도읍]----- 35
- 도로지정공고[화도읍]----- 36
- 도로지정공고[화도읍]----- 37
- 도로지정공고[화도읍]----- 38
-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진건읍]----- 39
-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진건읍]----- 40
-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진건읍]----- 41
- 도로지정공고[진건읍]----- 42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진건읍]----- 43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양주시 편집 : 홍보기획관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굴착)허가내용 공고[금곡동]-----	44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다산1동]-----	47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별내동]-----	49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0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1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3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4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위반사항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5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별내동]-----	56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고시 제2020-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내용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2020.09.08.								
점·사용의 목적	오수관로 매설								
점·사용의 장소	광전리 318-24번지								
공사내용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규격</th><th>수량</th></tr></thead><tbody><tr><td>오수관로</td><td>D=150mm</td><td>2.3m</td></tr></tbody></table>	구 분	규격	수량	오수관로	D=150mm	2.3m		
구 분	규격	수량							
오수관로	D=150mm	2.3m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임**							
	주 소	남양주시 불암로 337, 5105동 503호(유승한내들)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고시 제2020-23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내용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허가번호	제2015-공유수면-21-2호	
점·사용의 목적	농지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2237-2번지	
점·사용의 면적	5㎡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인**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 1071번길 20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허가번호	제2016-공유수면-3-2호	
점·사용의 목적	농지 및 진출입로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2219-1번지	
점·사용의 면적	200㎡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인**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로 1071번길 20
기타사항		

허가번호	제2020-공유수면-9-1호	
점·사용의 목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진출입로	
점·사용의 장소	별내동 785-11번지	
점·사용의 면적	33㎡	
점·사용의 기간	허가일 ~ 2022. 05. 3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성 명	김**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87, 1101호(상봉동)
기타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390호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 사무분장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제처 지침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사무의 일부가 재산관리과로 사무분장됨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 및 별표 개정(안 제15조, 별표)

나. 법제처 발행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3. 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참조: 남양주시청 재산관리과장,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팩스 : 031-590-8270, 전자메일 : sh12303@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 (☎031-590-21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규칙 제 호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날인함으로써 행한다”를 “날인함으로써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의해”로 한다.

제8조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한다.

제9조 중 “의하여”를 “의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호다목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재산관리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전기수
	담당자 성명·전화	권상희 (031-590-2173)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별표]

물품사무관리자(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남양주시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가 있는 경우)	과가 없는 사업소 및 읍·면·동	남양주시 의회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청사조성업무 담당	회계업무 담당	회계업무 담당	회계업무 담당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 실·과장	각 과장	-	-
분임 물품출납원	각 담당관· 실·과 주무 담당	각 과 주무담당	-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필요</u>----- ----- -----.</p>
<p>제7조(출납명령)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u>날인함으로써 행한다.</u></p> <p>④ (생략)</p> <p>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u>의하여</u>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p> <p>⑥ (생략)</p>	<p>제7조(출납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날인함으로써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의해</u>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u>적정여부</u>를 조사하여야 한다.</p>	<p>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 ----- ----- ----- <u>적정 여부</u>----- -----.</p>
<p>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u>의하</u></p>	<p>제9조(물품의 청구) ----- ----- ----- <u>의해</u> -----</p>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② (생략)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 ③ (생략)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남양주시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본청

-----.

제10조(물품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

- 아니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불용의 결정) -----

-----.

1.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가.·나. (생 략)

다. 회계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

2. ~ 4.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산관리과장-----

--

2. ~ 4. (현행과 같음)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391호

공인 등록(신조 및 폐기) 공고

남양주시 공인 조례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장

1. 공인 신조 및 폐기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2. 공인 사용 및 폐기일자 : 2020. 9. 10.
3. 공인명 및 인영 : 별도 붙임
- 신조공인 14개, 폐기공인 12개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인 영		비 고
	세로	가로	
남양주시장인민원사무전용			3.0cm×3.0cm
남양주시장인민원사무전용			3.0cm×3.0cm
수동면장인민원사무전용			2.4cm×2.4cm
남양주시장인민원사무전용			3.0cm×3.0cm
평내동장인민원사무전용			2.4cm×2.4cm
남양주시장인민원사무전용			3.0cm×3.0cm
금곡동장인민원사무전용			2.4cm×2.4cm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인 영		비 고
	세로	가로	
민원사무남양주시장인전용			2.4cm×2.4cm
민원사무수동면장인전용			2.1cm×2.1cm
민원사무남양주시장인전용			2.4cm×2.4cm
민원사무평내동장인전용			2.1cm×2.1cm
민원사무남양주시장인전용			2.4cm×2.4cm
민원사무금곡동장인전용			2.1cm×2.1cm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392호

덕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덕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0.

남양주시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덕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 사업위치
 - 시점 : 남양주시 삼패동 산16
 - 종점 : 남양주시 삼패동 630
- 사업규모
 - 하천연장 : 1.531km
 - 유역면적 : 2.150km²
- 사업시행자 : 남양주시
- 승인권자(계획수립기관) : 경기도(남양주시)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20.09.10 ~ 2020.10.13.(20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 소	남양주시	○ 남양주시청(생태하천과)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장 소	개 최 일 시	내용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회의실	2020년 9월 22일(화) 15:0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

4. 주민의견 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출 처 : 공람장소(정보통신망 제외)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 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2020년 10월 22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생태하천과(☎031-590-2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395호

2020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계획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장

1.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거 사용검사 된 남양주시 공동주택

2. 지원금액

- 전자투표 비용의 100% (만원 단위 이하 절사)
- 전자투표 관련 기기 구축·대여 및 인력지원 등의 비용은 지원 제외
-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하며, 해당 사업 신청 이후 추가 발생 비용은 제외

3. 대상사업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및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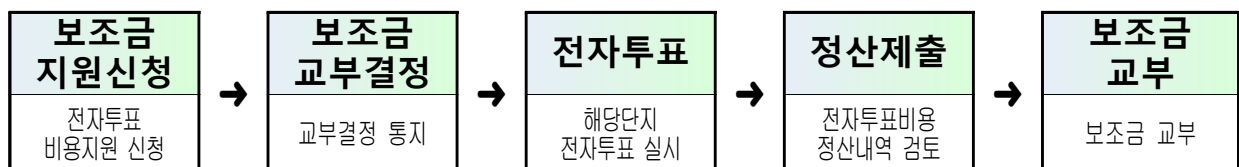
4. 신청기간 : 2020. 9. ~ 2020. 11. 30. 까지

※ 신청 후 해당단지의 정산보고 및 청구가 2020. 12월 11일까지 완료.

5. 접수처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 4층 주택과(담당 ☎ 031-590-4414)
- 신청서류 원본 방문 접수 또는 등기

6. 지원절차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 온라인 전자투표 및 보조금 신청절차

- ① 전자투표 시스템 신청 : 시스템 이용협약(단지 ↔ 투표기관)
- ② 해당단지 선거구 및 선거 총 세대 산정
- ③ 선거자료 입력 및 수수료 선납 : 단지 -> 해당 단체 시스템
 - ▶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선거 실시 전) 및 교부결정 통지
- ④ 전자투표 실시 : 선거 전 안내문자 및 선거 당일 투표 집계 등
- ⑤ 투표결과 및 입주자대표 선출 공고
 - ▶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10일 이내) 및 보조금 교부

7. 유의사항

- 본 보조금은 연간 수립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교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제반사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할 수 있음.
- 관련법에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 및 투표 관련사항이나 그 집행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는 보조사업자(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전자투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단지 선거 관련 문제는 본 보조금과 무관함.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조결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받을 수 없음. 단, 시장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
- 본 보조금 교부에 대한 결정과 그 교부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보조사업 결정 이후에도 이를 취소·반납 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8. 신청 관련 서류

- 1)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신청서 각 1부.
 - 2) 정산보고 및 청구서류 각 1부.
 -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보완 서류
- ※ 신청서 및 신청서 내의 구비서류를 각기 첨부하시어 제출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398호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위기상황의 일상화에 따른 학습형태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 전자적 학습도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 제2조)
-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항,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안 제5조 ~ 제7조)
- 환수(안 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 여성아동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팩스 : 031-590-2269, 전자메일 : cjs625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아동친화팀☎ 031) 590 - 8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안」

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위기상황의 일상화에 따른 학습형태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4조가 정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 전자적 학습도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가구 아동”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100 이하인 가구의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온라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PC 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지원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저소득 가구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스마트 기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포함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2.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기기 등의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 기기 등의 지원) ①시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기기
2.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포함)
3. 인터넷 강의 수강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은 아동에게만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저소득 가구 아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과 중·고등학교의 해당 연도 입학생으로 한다.

②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 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받은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해 그 사용 및 처분 등의 적정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스마트 기기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스마트 기기 지원 등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여성아동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여성아동과장 이 인 애
	담당·팀장 직위·성명	최 정 선 (031-590-8471)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동의서

대상 학생	1	성명	학교명	학년
	2	성명	학교명	학년
	3	성명	학교명	학년

확인사항

1. 지원대상 학생의 형제·자매 등이 교육청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PC 및 인터넷 통신비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폭력성 오락, 음란물, 채팅 등 비교육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가 해당 가정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사용 실태를 확인하거나, 유해 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의 교육적 사용을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주소 이전, 전화번호 변경, 인터넷 가입자명, 아이디, 통신사 변경 등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미 통보 시 통신비 지급 누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통신비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원기간 동안 통신사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컴퓨터를 지원 받은 경우 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양도 또는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 위의 동의하신 내용은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을 받으시는 동안 계속 유효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인)

(학생과의 관계:)

남양주시장 귀하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1402호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0.

남양주시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521번지 일원
- 다. 규 모 : 250톤/일(125톤/일×2기)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가. 공개기간 : 2020.09.10 ~ 2020.09.24(14일간)
- 나. 공개방법 : 인터넷 게시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다. 결정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3. 의견 제출방법 :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 서면제출[붙임2]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031-590-4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0- 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람 · 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장

가. 공람기간 : 2020.09.11. ~ 2020.09.25.

나. 공람장소 : 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토요일·공휴일 : 시청 본관 1층 당직실)
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35(덕소리 117-1)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다. 공람내용 :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 고려하여 덕소4구역 계획용적률 변경과 토지조서 현실화로 인한 계획면적 변경 및 중로(3-220) 선형변경 및 소로(와부 3-77)폐지에 따른 촉진지구 및 구역에 면적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경

라. 기 타 : 해당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남양주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590-2386]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0-191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접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348-22	1	조광스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78 (2020.9.3.)
도로지정 사유	진접읍 연평리 348-22번지상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0-194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접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62-11	32	달성서씨훈련봉사 공파내곡리총회	2020-도시건축과 신축허가-120 (2020.9.4.)
도로지정 사유	진접읍 내곡리 262-10번지상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 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0-195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지정(변경)공고 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접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594-37	594-37	130	114	신정*	2019-도시건축과-신 축신고-96 (2019.11.07.)
		594-53	-	16		
	합 계		130	130		
도로지정 사유	진접읍 금곡리 594-37번지 상 건축(변경)신고에 따른 변경된 도로편입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 기 도로지정 공고된 도로부지 구획변경(당초 공고번호 : 진접읍 공고 제2019-206호)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0-197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지정(변경)공고 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접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79	79	143	193	채두흥	2019-도시건축과- 대수선신고-1 (2019.10.17.)
		79-3		53		
	합 계		143	246		
도로지정 사유	진접읍 부평리 79번지 외1필지 상 대수선신고 관련 도로편입 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지정 변경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0-124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화도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 현황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97-15, 97-17	97-17	103	39	스카이밸류 주식회사	2019-도시건축과 -신축허가-8호 (2019.01.21.)
도로지정 사유	우리시 화도읍 차산리 97-3 외 4필지 상의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0-125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화도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산81-17	4	박내츠 곽태기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204호 (2020.09.04.)
	195	296	곽경근	
	합계	300		
도로지정 사유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산81-17번지 외 2필지 상의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0-126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화도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59-6	63	박내츠 유승모 곽태기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206호 (2020.09.04.)
	산81-17	134	박내츠 곽태기	
	195	111	곽경근	
	합계	308		
도로지정 사유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산81-20번지 상의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0-129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화도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신고)현황
화도읍 녹촌리	295-2	133.0	주식회사토펜스	2020-도시건축과 -신축허가-104호 (2020.09.07.)
합계		133.0		
도로지정 사유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95-2번지 상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화도읍사무소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0-9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건읍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신축건물 급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20.09.07. ~ 2029.09.30.
점용의 장소	퇴계원리 218-22 외 1필지 (218-154)	점용면적	임시점용 A=8.4㎡ 계속점용 A=0.56㎡ (상수관로 D=80mm, L=7m)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 방법	인력 및 기계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안내판 등
도로의 복구방법	재포장	도로굴착	-
점용자의 주소·성명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20 주식회사 제이앤유 대표 조기철	그 밖의 사항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0-91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건읍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배관 매설	점용기간	2020.09.07. ~ 2029.09.30.
점용의 장소	퇴계원리 221-2 외 2필지 (183-17, 232-2)	점용면적	임시점용 A=18㎡ 영구점용 A=0.96㎡ (D=160mm, L=6m)
점용물의 종류	도시가스 배관	공사기간	허가기간 중 3일
공사 방법	인력 및 기계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안내판 등
도로의 복구방법	재포장	도로굴착	-
점용자의 주소·성명	(주) 예스코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9-9	그 밖의 사항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0-92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건읍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 광관로 매설	점용기간	2020.09.08. ~ 2029.09.30.
점용의 장소	퇴계원리 361-41 외 1필지 (퇴계원리 373)	점용면적	임시점용 A=12㎡ 영구점용 A=1㎡ [(D=100mm, L=5m)*2]
점용물의 종류	통신 광관로	공사기간	허가기간 중 3일
공사 방법	인력 및 기계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안내판 등
도로의 복구방법	재포장	도로굴착	-
점용자의 주소·성명	SK텔레콤(주)	그 밖의 사항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0-93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건읍장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지 번	면적(㎡)	소유자현황	허가현황
진건읍 사능리	580-8	8.0	정소*	2020-도시건축과-GB내 행위허가-42 (2020.07.29.)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0-94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건축물 토지주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진건읍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남*, 조춘* 외 3인)
2. 근 거: 「건축법」 제80조
3.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지	물건 소재지	위법내용					내용	공시송달 사유
		위반내용	구조	용도	면적(m ²)	행위년도		
강민* (1980.11.0*) /경기도 파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2*번지	무단신축	조립식 패널조	창고	9.25	1993년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020.08.25.)	등기우편 송달불가
강정* (1961.12.2*) /전라북도 군산시								
송해* (1983.06.*3) /경기도 구리시								

4. 공고기간: 2020. 09. 10. ~ 2020. 09. 24.(14일간)
 5. 공고장소: 시보, 시정홍보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진건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6. 기타사항
 - 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시 상기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진건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031-590-39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건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031-590-3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1부.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0-122호

도로점용(굴착)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금곡동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가정급수 공사)	점용기간	2020.09.09. ~ 2020.12.31.
점용의 장소	삼패동 333-17, 333-19, 337-6	점용면적	일시면적 = 2.45㎡ 영구면적 = 68.6㎡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	공사기간	2020.09.01. ~ 2020.10.31. (기간 중 5일, 야간)
공사 방법	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유경*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	그 밖의 사항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국도6호선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가정급수 공사)	점용기간	2020.09.09. ~ 2029.12.31.
점용의 장소	삼패동 337-7, 339-4, 340-1, 340-2	점용면적	일시면적 = 2.1㎡ 영구면적 = 58.8㎡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	공사기간	2020.09.01. ~ 2020.10.31. (기간 중 5일, 야간)
공사 방법	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강화* (구리시 경춘북로 303번길 5-2*)	그 밖의 사항	-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국도6호선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가정급수 공사)	점용기간	2020.09.09. ~ 2029.12.31.
점용의 장소	삼패동 337-11, 332-2, 337-6, 337-7, 337-10	점용면적	일시면적 = 2.6㎡ 영구면적 = 36.4㎡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	공사기간	2020.09.01. ~ 2020.10.31. (기간 중 5일, 야간)
공사 방법	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김강* (남양주시 양정로229번길 1*)	그 밖의 사항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국도6호선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가정급수 공사)	점용기간	2020.09.09. ~ 2029.12.31.
점용의 장소	삼패동 332-2	점용면적	일시면적 = 0.4㎡ 영구면적 = 11.2㎡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	공사기간	2020.09.01. ~ 2020.10.31. (기간 중 5일, 야간)
공사 방법	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주)원앤* 전기* (남양주시 경강로 35*)	그 밖의 사항	-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경춘로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홍유릉 역사체험관 급수공사)	점용기간	2020.09.09. ~ 2029.12.31.
점용의 장소	삼패동 332-2	점용면적	일시면적 = 0.3㎡ 영구면적 = 6.0㎡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	공사기간	2020.09.09. ~ 2020.12.09. (기간 중 7일)
공사 방법	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원 배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남양주시장(도시재생과)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그 밖의 사항	-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0-58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다산1동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설치	점용기간	2020. 09. 01. ~ 2029. 12. 31.
점용의 장소	다산동 6273번지 (다산동 6142번지 앞)	점용면적	계속점용 4.95㎡ (Ø150mm × 33m)
			일시점용 33㎡ (1m × 33m)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	공사기간	2020. 09. 01. ~ 2020. 10. 31. (기간중 7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주)빙그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다산동)	그 밖의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 배관설치	점용기간	2020. 09. 03. ~ 2029. 12. 31.
점용의 장소	다산동 6253-1번지 (다산동 6019번지 앞)	점용면적	계속점용 0.45㎡ (Ø90mm × 5m)
			일시점용 4㎡ (0.8m × 5m)
점용물의 종류	도시가스관	공사기간	2020. 09. 03. ~ 2020. 09. 30. (기간중 3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주)에스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49-8	그 밖의 사항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열배관 인입공사	점용기간	2020. 09. 03. ~ 2029. 12. 31.
점용의 장소	다산동 6254-9번지 (다산동 6052-2번지 앞)	점용면적	계속점용 9.7㎡ (Ø400mm × 22.4m)
			일시점용 38.1㎡ (1.7m × 22.4m)
점용물의 종류	열배관	공사기간	2020. 09. 03. ~ 2020. 09. 30. (기간중 5일)
공사 방법	노면굴착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점용자의 주소 · 성명	별내에너지(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91	그 밖의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9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대로 2-4
점용의 목적	우,오수관로 배관공사	점용기간	허가일 ~ 2029.12.31.
점용의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4(건축1005)	점용면적	일시점용 A=140㎡ 계속점용 D=300mm, L=4m D=800mm, L=8.6m
점용물의 종류	우,오수관로	공사기간	2020.09.03 ~ 2020.09.13. 중 5일
공사 방법	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안전펜스, 삼각표지판,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경광등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그 밖의 사항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94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사전통지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기간 : 2020.9.10. ~ 2020.9.24.(14일간)
4. 송달대상 : 이석○
5. 송달내용

위 치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관련 지번
	행위자	토지(건축) 소유자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	행위일시	
별내동 605-2	이석○ [남양주시 불암로 97-○○]	이효○	용도변경	창고	일반철골구조	248.3	2020년경	
			증축	휴식공간	컨테이너	18		
	용도변경		창고	일반철골구조	248.3			
	증축		창고	철주천막(3동)	56			
	이효○		증축	화장실	경량판넬	9	2018년경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95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고기간 : 2020.9.10. ~ 2020.9.24.(14일간)
4. 송달대상 : 이영기, 이영호, 청풍김씨○○중과중중
5. 송달내용

위 치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행위자	토지(건축) 소유자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	행위일시	관련 지번
별내동 2195-11	임연○	박윤○ 이영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84] 이영○	용도변경	사무실	블럭조	30	2014년경	
		이신○ 이주○ 이영○ 주식회사○○투 자대부 이한○ 박재준○ 박희○카○ 박○	공작물 설치	계근장	철구조물	15		
		이영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 박영○	형질변경	고물상 부지	-	400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위 치	위반행위자		위 법 행 위 내 용					관 련 지 번
	행위자	토지(건축) 소유자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m ²)	행위일시	
별내동	류지○	청풍김씨○○중 파종중	신축	창고	컨테이너	18	2004년경	45-7
45-3	이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4] 국	신축	사무실	컨테이너 (2동)	36		45-7
45-7	류지○ 이성○	(국방부)	형질변경	주차장	바닥자갈 포설	2,076		45-3 45-7 45-8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96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근 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기간 : 2020. 9. 10. ~ 2020. 9. 23. (14일간)
4. 송달대상 : 혜○개발주식회사 대표, 주식회사 건○미래
5. 송달내용

대상자	위 치	위 법 행 위 내 용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 조	규모 (m ²)	행위 일시	비고
혜○개발주식회사 대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30-8, ○동 ○○○호]	별내동 1150-3	신축	창고	컨테이너	18	2020	
		신축	창고	컨테이너	15	2020	
		신축	창고	컨테이너	18	2020	
		신축	창고	컨테이너	18	2020	
주식회사 건○미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262,○ 층]	별내동 995	신축	창고	컨테이너	18	2020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97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2.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20. 9. 10. ~ 2020. 9. 23. (14일간)
4. 송달대상 : 이병○
5. 송달내용

대상자	위 치	위 법 행 위 내 용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 조	규모(m ²)	행위 일시	비고
이병○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85, ○○○○동 ○○○○호]	별내동 1171	증축	창고	컨테이너	12	2020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98호

건축법 위반사항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위반사항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근 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기간 : 2020. 9. 10. ~ 2020. 9. 23. (14일간)
4. 송달대상 : 정병○
5. 송달내용

대상자	위 치	위 법 행 위 내 용					
		위법내용	위법용도	구 조	규모(m ²)	행위 일시	비고
정병○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39번길 ○○, ○○○호]	별내동 958-2	증축 (다락 출입문 설치)	주거시설 (다락→주택)	철근콘크리트조	87.03	2014	
		대수선	주계단증설	철파이프조	2.22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

남 양 주 시 보

제1855호

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0-99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0. 9. 10.

남양주시 별내동장

1.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2.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
3. 공고기간 : 2020. 9. 10. ~ 2020. 9. 23. (14일간)
4. 송달대상 : 김귀○, 김규○
5. 송달내용

대상자	위 치	시정명령 내용	비고
김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4, ○○○○동 ○○○호]	별내동 103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실외기실에 설치하거나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하는 사항	
김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4, ○○○○동 ○○○호]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별내행정복지센터